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11
----------	----

발의년월일 : 1998. 4. 16

발 의 자 : 이상은의원의외 6인

1. 제안이유

- 현행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은 1991. 4. 15제정된 이후 '92. 4. 28일과 '92. 10. 22일 등 2차례에 걸쳐 개정된바 있으나, 동규칙 개정 이후 지방자치법(5회)과 동시행령이(6회) 개정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본의회 회의규칙에 충실히 반영하고, 아울러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의 근간인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을 수용함으로써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회의규칙을 개정코자함.

2. 주요골자

- 의원의 등록을 임기초에 하도록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면 임기 개시전이라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토록 함. (안 제2조)
-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날의 전일까지 재임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5일이내에 집회하여 차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토록 함(안 제9조 제2항)

- 의원의 본회에서 발언기회 확대를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의중인 의안 및 기타 주요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5분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함.
(안 제33조의 2)

- 현행 규칙의 구정질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법에 의한 「정부에 대한 질문」에 준하여 구정질문 관련규정을 추가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한다.
- 제9조 제2항중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를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5일 이내에 집회하여 차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다”로 한다.
-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 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 자유 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 제6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6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6조의 2(구정에 관한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구정질문을 할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질문을 한 의원에게 10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u>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후.....</u> </p>
<p>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p>	<p>제9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②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5일 이내에 집회하여 차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다.</p>
<p>제33조의 2(5분 자유발언) < 신 설 ></p>	<p>제33조의 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p> <p>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 할 수 없다.</p>

현행	개정
<p>제66조(구청장등의 출석요구)①~③(생략)</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6조의 2(구정에 관한 질문) <u><삭 제></u></p>	<p>①~③(현행과 같음)</p> <p>④ <삭 제></p> <p>제66조의 2(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구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을 한 의원에게 10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한다.</p>